

# 中国法学教育制度的改革

何家弘\*

## 一. 改革法学教育制度是中国法制现代化的需要

实现法制现代化，建设现代法治国家，这是当代中国人的奋斗目标。要实现这一宏伟目标，我们既要建立符合法治精神的法律体系，也要建立能够维护法治的司法和执法体系，更要建立符合法治要求的社会人文环境。然而，这一切都必须通过人的活动才能实现，首先是法律职业人员的活动。因此，培养合格的法律职业人员就是中国实现法治的重要条件。

近年来，司法改革是中国法学界、司法界，乃至社会公众都很关注的一个问题。毫无疑问，中国司法改革的基本方向是法治化和文明化，但是，究竟如何走向法治和文明，却是需要我们认真研究和不断探索才能回答的问题。中国的法律制度更接近于大陆法系，但是从20世纪90年代开始的司法改革则在很大程度受着美国的法律制度和司法模式的影响。例如，90年代中期开始的审判方式改革就是从职权主义的纠问式诉讼制度转向当事人主义的抗辩式诉讼制度。不过，由于我们对改革的目标、规律和路径缺乏宏观的把握，所以使改革带有很大的盲目性、混乱性和摇摆性。这既表现在基本价值定位和制度设计上，也表现在具体规则和措施的制定上。于是，改革似乎就成了“变花样”，不管道理如何成效如何，只要与原来不同(有时只是名称或说法不同)就是改革。各地区各部门的改革“花样”层出不穷，但往往都是徒有虚名甚至昙花一现。中国的司法改革似乎已经走入了难见实效的困境。

如今，不少学者都在研究和思考中国的司法改革问题。笔者认为，要想使中国的司法改革走向深入并取得实效，一方面，我们要认真研究世界各国司法制度发展的大趋势，再结合中国的历史传统和社会现实情况，更加科学地确定我国司法改革的目标和路径；另一方面，

---

\* 中国人民大学法学院教授，博士研究生导师，美国西北大学法学博士

我们必须加强法律职业人才的培养，建立符合现代法治国家所要求的法学教育制度。其实，我国近年来一些司法改革措施的目标和设计都是不错的，但是由于相关人员的素养问题，其实际效果就都打了折扣，甚至根本无法实现改革的预期目标。由此可见，法律职业人员的素质修养和专业水平已经成为司法改革的主要障碍，完善法学教育制度实际上是司法改革的重要路径之一。从这个意义上讲，司法改革也在推动着法学教育制度的改革。

## 二. 中国法学教育制度的现状及其存在的问题

中国现有的法学教育制度是在“文化革命”结束之后，于20世纪70年代后期重建的。当时，中国法学教育的规模小得可怜。中国于1977年恢复高考，当年全国只有北京大学和吉林大学等4所高等学校招收法学本科生，招生人数仅为280人；1978年实行全国统一高考，招生学校增加了中国人民大学和西南政法学院，但全国招收的法学本科生也不过729人。在尔后的几年内，中国的法学教育有了较大的发展。到1983年，全国已经恢复建立了5所政法院校和31所综合大学法律系，法学在校学生的人数达到了1.4万人，法律专业教师达到了1400人。为了适应社会的需要，电视大学和函授大学等成人法律教育也发挥了重要作用，为在职法律工作者提供了学习法律的机会。经过20年的发展，中国现在已有法律院系300多所，其中经教育部批准设立的232所；全国每年的招生人数已达到10万人。

当前中国的法学教育已经具有了相当的规模，但是也还存在着很多问题。首先，法学教育的发展很不平衡。这既包括地区之间的不平衡，也包括学校之间的不平衡。水平较高的法学教育机构主要集中在经济比较发达的东南沿海的大城市，如北京、上海等，而西部地区的法学教育机构较少，教学水平也较低。与此相应，法律人才的地区分布也很不平衡。在北京、上海、深圳等经济发达地区，受过正规高等教育的法律人才似乎已出现供应过剩的现象，但是在大多数西部地区，受过正规高等教育的法律人才仍很缺乏。其次，法学教育体制比较混乱，教学水平参差不齐。在中国实行“改革开放”和市场经济的社会环境下，中国的法学教育体制呈现出多层次、多渠道的特点。教育层次包括专科、本科、研究生；教育渠道包括正规高等教育，成人高等教育，自学高考，职业教育等。这种现状自有其历史的必然性，而且在一定程度上满足了社会对法律人才的迫切需要，但是却很难保证法律人才培养的水平。例如，一些综合大学或传统的理工科大学为“赶时髦”或“上档次”而仓促建立的法律院系往往缺乏合格的师资，其教学质量自然难以保证。再次，法学教育与法律实践脱节比较严重。法律

具有高度的实践性和社会性，因此法学教育必须适应社会实践的需要。目前，法律院系毕业的本科生和研究往往都不能很快适应法律实务部门的工作需要，一般至少要三四年的时间才能够适应工作环境并独立处理各种法律事务。法律实务界普遍反映法学教育的内容和方法与法律实践脱节，导致毕业生缺乏实际操作能力，缺乏对法律实务工作的了解。

诚然，造成上述问题的原因是多方面的，其中既有教育体制和教育观念的原因，也有教学方法和教师水平的原因。总的来说，中国的法学教育处于发展阶段，出现这些问题不足为奇。其中，有些原因是一时无法解决的，有些则是可以解决的，如教育观念的问题。中国的法学教育一直比较注重理论方面的教学，注重灌输理论知识，注重学生进行法学研究和写作论文的能力，没有把培养具有法律实务技能的实用型人才作为培养的目标。在一些教师的心目中，似乎只要把法律的概念、原则、逻辑、理论灌输给学生，学生就可以解决具体案件中的问题了。理论固然是重要的，但是纯粹的理论对培养具有实际操作能力的法律人才并没有太大的帮助。另外，许多法学教师的工作也偏重于理论研究，对实务问题不太关注。从事法学教育的人自己不了解法律实务，自然就很难培养出掌握法律实务技能的人才。

### 三. 中国法学教育制度的改革之路

目前，中国的法学教育面临着一个由历史传统和社会发展所带来的矛盾，即法律人才培养的自身规律与社会对法律人才的需求之间的矛盾。法律家一个是要求很高，专业化程度很高的职业，与医生、会计师等相同，并非什么人都可以当的。一名合格的法律家应该具备的基本条件有三个方面：其一是学识，既包括专门的法律知识，也包括社会生活的知识和经验；其二是道德，即以追求和维护司法公正为核心的行为准则；其三是技能，包括法律思维与推理能力，理解和解释法律的能力，分析和运用证据的能力，撰写法律文书的能力等。由此可见，法学教育本应是一种精英教育。但是，中国目前的社会现状似乎还不允许法学教育追求精英化培养模式，因为社会需要快速培养出大量的法律职业人，因为社会需要对大量现在从事法律工作的人进行培训，也因为现有的教育体制和师资还不能承担精英式教育的重任。另外，中国现在的法学教育是以高中毕业为起点的本科模式。17~18岁的年轻人经过四年的本科教育，很难成为精英式法律家。当然，为了改变这种状况，我们近年来已经而且正在做出一些有益的努力。

### **一. 通过统一司法考试提升法学教育的水平**

中国从1986年开始举行面向社会的全国律师资格考试，到2000年共举行了11次，通过人数约18万人。自1995年开始实施《法官法》和《检察官法》以来，中国的法院和检察院分别在本系统内部举办了三次初任法官和初任检察官的考试。2001年6月30日，第九届全国人大审议修订《法官法》和《检察官法》，决定实行统一的司法考试制度。随后，《律师法》也进行了修订，规定只有经过国家司法考试才能取得律师资格。2001年10月31日，司法部会同最高人民法院和最高人民检察院制定了《国家司法考试实施办法(试行)》，决定将法官资格考试、检察官资格考试和律师资格考试统一起来，以促进法律职业的一体化。根据有关规定，参加国家司法考试的学历条件为：具有高等院校法律专业本科以上学历，或者高等院校其他专业本科以上学历具有法律专业知识。同时，考虑到中国法学教育发展不平衡的现实情况，又规定在适用上述学历条件确有困难的地方，在一定期限内，可以将报名的学历条件放宽为高等学校法律专业专科学历。2002年3月30, 31日举行了首次国家司法考试，报名36万多人，其中从事法律工作的法官，检察官，公务员等近16万人；实际参加考试31万多人，通过人数为2.4万多人，通过率约为7%。国家司法考试每年举行一次。

统一司法考试是在法学教育和法律职业之间架起的一座桥梁，其功能在于将符合现代法治要求的人才选拔到法律职业队伍中。司法考试的内容和模式也尽可能体现与法学教育的衔接。司法考试确定的考试科目是在征求中国法学教育界意见的基础上确定下来的，考试范围以法学教育的14门核心课程为主。司法考试应该以大学法学教育为基础，但司法考试并不是大学的毕业考试，也不能等同于大学的毕业考试。因此，司法考试的模式是在14门核心课程的范围内，注重考察学生综合运用所学知识分析具体问题解决具体问题的能力。从这个意义上讲，统一司法考试既可以衔接法学教育与法律实务，又可以促进法学教育水平的提升。

### **二. 注重培养实务型法律人才**

法学教育要适应社会发展的需要，要培养出适应社会需要的法律人才。但是，中国社会需要法学教育培养什么样的人才？是主要培养法学研究人才，还是主要培养法律实务型人才？我认为应该是后者。明确了这一点，就明确了我国法学教育制度改革的方向。我曾经在美国留学，攻读法学博士学位，因此对美国的法学教育有一些直接的感受。在美国，法学教育的目标就是培养从事法律实务的人才。因此，美国法学院的教学内容和方法都是围绕培养

法律实务人才设计和实施的。近10年来，中国也在学习美国的法学教育制度，力图实现法学教育的实务化。1996年，中国模仿美国的“法律博士”(J.D.)设立了“法律专业硕士”学位，专门培养实务型法律人才。目前，这一制度已经在全国高等学校的法律院系中全面推行。

中国法学教育制度改革的方向就是要实现法律学科教育和法律职业教育的统一。为此，我们一方面要改革高等法学教育制度；另一方面要完善法律职业技能培训制度。为了实现法律职业的一体化，法官、检察官和律师不仅要具有相同的知识，而且要具有相同的职业素养和技能。司法考试只是实现这种一体化的第一步，我们还要加强法律职业的终身化继续教育。在这方面，国家法官学院和国家检察官学院都在发挥着重要的作用，但是仍然存在一个统一在职培训的内容和标准的问题。在律师的继续教育方面，中华律师协会已经制订了《律师继续教育试行办法》和《执业律师岗前培训教育大纲》(草案)。今后要严格执行“实习律师培训制度”，在律协的统一规范指导下，有律师事务所组织实施。目前正在筹建中的全国律师学院也应该在律师的继续教育方面发挥重要作用。

### 三. 法学教学方法的改革

法律是一门实践性很强的学科，法律教学方法也应该适应这种需要。在中国，传统的教学方法是以教师讲授为主的。近年来，案例教学法在中国得到了一定程度的推广，但是还存在不少障碍。除了教育观念和教师个人的习惯和能力等问题以外，法院的判例缺乏系统全面的公开也是一个原因。法学教师很难全面地根据自己的需要去收集判例。中国毕竟不是一个判例法的国家。

在教学方法改革方面，我们也学习了美国法学院的“诊所式”教学模式。所谓“诊所式”教学，是20世纪60年代开始在美国法学院兴起的一种新的法学教育方法。学生在法律教师的指导下，代理真实案件，向当事人提供法律咨询意见，解答法律问题，提供法律服务。从2000年开始，中国人民大学、北京大学、清华大学等10所法学院在传统的法律实习活动的基础上开始尝试“诊所式”法律教育模式，以提高学生的理论联系实践和法律实务能力。到目前为止，这种方式已经取得了很好的效果，正在向全国推广。

综上所述，中国的法学教育正在向一体化、实务化、精英化发展。但是，要使中国的法学教育满足建设现代法治国家的需要，我们面前的道路还很长，正所谓“任重而道远”。

## 중국법학교육제도의 개혁

何家弘\*

### 一. 법제현대화의 수요에 의한 법학교육제도 개혁

법제현대화를 실현하고 현대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당대 중국인들이 분투해야 할 목표이다.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치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체계를 건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법 및 법집행체계를 건립해야 하며, 나아가 법치요구에 부합하는 사회인문환경을 건립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법률종사자들의 활동이다. 따라서 법률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최근 몇 년에 걸친 사법개혁에 중국법학계나 사법계 혹은 사회방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은 법치화와 문명화이지만, 어떻게 법치화와 문명화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진실한 연구와 끊임없는 탐색을 통해서 회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중국의 법률제도는 대륙법계에 보다 접근해 있지만 1990년대에 시작된 사법개혁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법률제도와 사법형식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심판방식의 개혁은 바로 직권주의에 의한 규문식(糾問式) 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에 의한 변론식 소송제도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목표나 규율 및 방법에 대한 거시적인 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많은 맹목성이나 혼란성 혹은 요동성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은 기본가치의 정립과 제도설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구체적인

\* 중국인민대학법과대학교수, 박사연구생도사, 미국서북대학법학박사

규칙과 실시의 제정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은 마치 “형식을 바꾸는” 것처럼 되어 도리(道理)나 효과와 상관없이 단지 처음과 서로 다르기만 하면(때로는 단지 명칭이나 설법이 다르기만 하면) 개혁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 각 지역이나 각 부서에서 개혁 “형식”의 개혁은 계속되어 일어났지만 유명무실해지거나 심지어는 얼핏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국의 사법개혁은 마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곤경에 처한 듯 했다.

지금 적지 않은 학자들이 중국의 사법개혁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필자가 인식하기에 중국의 사법개혁을 보다 깊이 있게 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다면, 세계 각국 사법제도 발전의 큰 흐름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다시 중국의 역사·전통과 사회현실을 결합한 후, 과학적으로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법률종사자의 육성을 강화하여 현대법치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학교육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사실 근래 사법개혁의 실시목표나 설계방면에서는 잘못이 없으면서도 관련인원의 소양문제로 인해 실제효과는 감소하거나,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개혁의 기대목표를 실현할 방법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로써 전문법률종사자의 소질수양이나 전문적인 수준이 이미 사법개혁의 주요한 장애가 되었으며, 완벽한 법학교육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법개혁 또한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二. 중국법학교육제도의 현황과 실존하는 문제

기존의 중국법학교육제도는 “문화혁명”이 끝난 후 1970년대 후반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중국법학교육의 규모는 보잘 것 없었다. 중국은 1977년 대학입학제도를 회복하였고 그 해 북경대학과 길림대학 등 4개의 대학에서만 법학본과생을 모집하였으며 모집학생수도 280명에 불과했다. 1978년 전국통일 대학입학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학생모집 학교는 중국인민대학과 서남정법학원 등 두 개 학교가 늘었으나 전국적인 법학본과 학생수는 729명에 불과하였다. 그 후 몇 년간 중국의 법학교육은 큰 발전을 이루었다. 1983년에 이르러 전국에는 이미 5개의 정법대학과 31곳의 종합대학에 법률학과가 설립되었으며, 법학 재학생수는 1.4만명에 달하고 법률 전문 교사도 1400명

에 달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TV대학과 통신대학 등 성인법률대학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재직 중인 법률업무담당자에게 법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여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중국은 이미 법률대학원과 대학이 300여 곳에 이르며, 그 중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곳이 232곳이고 매년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학생수도 이미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법학교육의 발전이 매우 불형평적이다. 이는 지역간의 불형평은 물론이고 학교간의 불형평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교육기구는 주로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남연해주의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부지구의 법학교육기구는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교학수준도 낮다. 법률인재의 지역적인 분포 또한 매우 심한 불균형을 보이는데, 북경이나 상해, 심천 등의 경제발달지역에서는 이미 정규 고등교육을 받은 법률인재들의 공급과잉현상을 보일 정도지만 대다수 서부지역에는 정규 고등교육을 받은 법률인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둘째, 법학교육체제가 비교적 혼란스럽고 교학수준도 일정하지 못하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하에서 중국의 법학교육체제는 다양한 과정, 다양한 방도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교육과정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을 포함하고, 교육방법은 정규고등교육, 성인고등교육,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인 필연성은 물론이고 사회의 법률인재에 대한 절박한 수요를 만족시키진 하였으나, 법률인재 양성의 수준을 보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일부 종합대학 혹은 전통적인 이공과대학에서 '유행'을 쫓아서 혹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설립한 법률대학원이나 법률학과의 자질부족이 종종 나타나며 그 교학수준 또한 자연히 보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법학교육과 법률실천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법률은 고도의 실천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교육은 반드시 사회적 실천에 적합해야 한다. 현재 법대를 졸업한 본과생과 연구생이 재빨리 법률실무부서의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적어도 3-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업무환경에 적응하여 독립적으로 각종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편적으로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법률실무와 서로 맞지 않아 졸업생들의 실제 실행능력이 부족하고 법률실무 작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체제나 교육관념이 원인인 것도 있고 교육방법과 교사수준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법률교육은 발전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일부 원인은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는 일시에 해결가능한 것도 있는데 교육이념의 문제가 그것이다. 중국의 법률교육은 줄곧 이론방면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이론지식을 주입하고 학생들이 법학연구를 진행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에만 치중하였을 뿐 법률적인 실무기능을 갖춘 실용형 인재를 키우는 양성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교사들의 식견속에서 단지 법률의 개념이나 원칙, 논리, 이론만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만 해도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이론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순수한 이론은 실제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인재를 양성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밖에 많은 법학교수들은 이론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실무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있다. 법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스스로도 법률실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법률실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三. 중국법학교육제도 개혁의 길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은 역사적인 전통과 사회발전이 물고 온 모순에 직면하였는데, 즉 법률가 양성의 자체 규율과 사회적인 법률가에 대한 수요 사이의 모순이 그것이다. 법률가는 의사나 회계사 등과 동일한 정도로 요구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매우 높은 직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법률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3가지 면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학식으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을 포괄하는 것이다. 둘째는 도덕성으로, 사법공정의 추구와 수호를 핵심으로 하는 행위준칙이다. 셋째는 능력으로, 법률사유와 추리능력,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증거를 분석하고 운용하는 능력,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등이다. 이로써 법학교육은 반드시 엘리트교육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사회 상황은 마치 법학교육이 엘리트화를 추구하는 양성제도를 지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사회가 대량의 법률종사자를 배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회가 대규모의 현재 법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교육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또한 기존의 교육체제나 교사 자질이 여전히 엘리트식 교육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밖에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하는 본과 모드로 되어 있다. 17~18세의 젊은이가 4년간의 본과 교육을 마치고 엘리트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근래에 그리고 현재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一. 통일 사법고시를 통해 법학교육의 수준을 제고한다.

중국은 1986년부터 전국 변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까지 11차례 시험을 거쳐 현재 합격자가 18만명에 이른다. 1995년부터 〈법관법〉과 〈검찰관법〉을 실시한 이래 중국의 법원과 검찰원은 각기 내부에서 3차례의 초임법관과 초임검찰관 시험을 실시하였다. 2001년 6월 30일 제9회 전국인대에서는 〈법관법〉과 〈검찰관법〉을 심의·수정하여 통일된 사법고시제도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뒤이어 〈변호사법〉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해 국가사법고시를 거쳐야만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10월 31일 사법부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국가사법고시실시방법〉을 제정하여 법관자격고시와 검찰관자격고시, 변호사자격고시를 통일하여 법률직업의 일원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사법고시에 참가할 수 있는 학력조건은 대학 법률 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혹은 대학 기타 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에 법률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다. 아울러, 중국 법학교육발전의 비형평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상술 학력조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학력조건을 법률전공 전문대로 그 조건을 완화키로 규정하였다. 2002년 3월 30일과 31일 제1회 국가사법고시가 시행되었는데 신청자가 36만 여명이었고 그 중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찰관, 공무원 등이 16만명이었다. 실제 시험응시자는 31만 여명, 시험 합격자가 2.4만명으로 합격률은 약 7%였다. 국가사법고시는 매년 한차례 시행된다.

통일사법고시는 법학교육과 법률직업 사이에 놓인 하나의 교량으로 그 기능은 현대의 법적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법률직업행렬 속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사법고시의 내용과 방식은 최대한 법학교육과의 접목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법고시에서 확정된 고시과목은 중국 법학교육계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확정한 것이며 고시범위는 법학교육의 14개 핵심과정을 위주로 하고 있다. 사법고시는 반드시 대학의 법학교육을 기초로 해야 하지만 결코 대학의 졸업시험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법고시의 방식은 14개 핵

심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배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사법고시는 법학교육과 법률실무를 연관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학교육수준의 제고를 촉진시킬 수 있다.

## 二. 실무형 법률인재 배양을 치중

법학교육은 반드시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하며, 사회수요에 적응하는 법률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사회는 어떤 인재의 배출을 필요로 하는가? 주로 법학연구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나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면 우리나라 법학교육제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법학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미국에서 법학교육의 목표는 법률에 종사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법과대학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모두 법률 실무인재 배출과 연관하여 설계하고 실시한다. 약 10여년간 중국도 미국의 법학교육제도를 배워 법학교육의 실무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1996년 중국은 미국의 “법률박사(J.D.)”를 모방하여 “법률전문석사”학위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였다. 현재 이 제도는 이미 전국대학의 법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법학교육제도 개혁의 방향은 바로 법률학과의 교육과 법률직업교육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편으로 고등법학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법률직업기능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법률직업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 검찰관과 변호사는 서로 동일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동일한 직업소양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고시는 단지 이러한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법률직업을 강화하려면 평생교육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면에서 國家法官學院과 國家檢察官學院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여전히 통일된 하나의 재직훈련 내용과 기준의 문제가 존재한다. 변호사의 평생교육 방면에 있어서 중화변호사협회는 이미 <변호사 계속교육 시행방법>과 <변호사업 교육훈련초안>을 제정하였다. 향후 “실습변호사교육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변호사협회의 통일규범의 지도 하에 변호사사무소가 조직되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전국변호사대학 또한, 반드시 변호사의 평생교육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三. 법학 교육방법의 개혁

법학은 실천성이 매우 강한 학문으로서 법학의 교육방법 또한 이러한 수요를 충족 시켜야 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은 교수의 강의를 위주로 한 것이었다. 근래에 들어 판례교육법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교육이념과 교수 개인의 습관 및 능력 등과 같은 문제 외에도 법원의 판결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하나의 원인이다. 법학교수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전면적으로 판례를 수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분명 판례법에 의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방법의 개혁에 관해서 우리들 또한 미국 법학대학원의 “법무실습소식(legal clinic)” 교육모델을 참조하였다. 소위 법무실습소식(legal clinic) 교육이란 1960년 대로부터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법학교육방법이다. 학생이 법학교수의 지도 하에 어떤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법률문제의 해답을 조언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중국인민대학,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10여곳의 법과대학에서는 전통적인 법률실습활동을 기초로 하여 법무실습소식(legal clinic) 교육방식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여 법률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은 이미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법학교육은 현재 일원화, 실무화, 엘리트화를 향해 발전해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법학교육이 현대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임무는 무겁고 갈길은 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매우 멀다.